신규 채용직원의 경력산정 기준

구분	경력내용	환산율		
		100%	70%	50%
공통	군 복무경력	○		
국가ㆍ지자체 공무원	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경력	○		
공공ㆍ출자ㆍ출연기관 근무경력 (정규직)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	채용관련분야 업무 외 (단,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 상근경력만 인정)		○	
국가ㆍ지자체, 공공ㆍ출자ㆍ출연기관 근무경력 (비정규직)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	채용관련분야 업무 외 (단, 행정ㆍ경영ㆍ연구ㆍ기술분야 상근경력만 인정)			○
법인, 단체, 민간기업체 경력	채용관련분야 업무	○		

※ 4대 보험 가입증명 가능한 자에 한하여 적용